

시간선택제 전환지원제도

- **(사업목적)**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(자녀 보육, 퇴직준비, 학업, 간병 등)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,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
 - **(지원대상)**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, 근로자의 필요(자녀돌봄, 퇴직준비, 학업, 간병 등)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
 - 단,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에 한해 지원
 - **(지원요건)**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(취업규칙, 인사규정 등)를 마련
 -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, 『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*』 실시하는 경우도 지원

* 임신 12주 이내, 임신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해야 함

<시행일 : 300인 이상 사업장 '14.9.25 / 300인 미만 사업장 '16.3.25.>

 -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
- **(지원내용)** 전환장려금, 간접노무비,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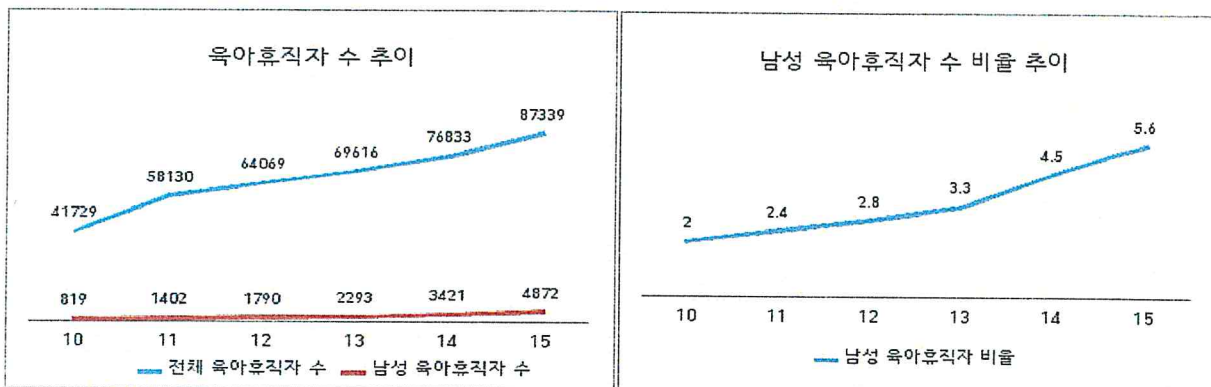
- **(전환장려금)** 주15~25시간 전환시 월 20만원, 주26~30시간 전환시 월 12만원/임신기는 단축 시간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
 - ☞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지원금 지급 (근로자 수혜)
- **(간접노무비)** 중소·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·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(정액)을 1년간 추가 지원
- **(대체인력지원금)**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%를 월 60만원(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) 한도로 1년간 지원

☞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방법은 부산고용센터 홈페이지
(www.work.go.kr/busan) ⇒ 정보마당 ⇒ 서식자료실 참고

남성 육아휴직 - “아빠의 달”

1 추진 배경

-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, 공공부문·대기업 중심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은 정착되어 가는 분위기
- 남성 육아휴직*도 증가하고는 있지만, 전체 육아휴직자 대비 5.6%에 불과하여 남녀 간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 보장차원에서는 미흡한 수준
- * 현재 육아휴직 제도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간 휴직을 보장함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)



2 지원 내용

□ “아빠의 달” 지원

- 통상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40%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나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
- 두 번째 사용자*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최대 150만원까지) 지원

* 엄마,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